# <u>계</u> 약 사

계약일자: 2020년 09월 24일

㈜인포솔루션 (이하 "갑" 이라 칭함)과 엘지시스템에어컨(J&J ENG) (이하 "을" 이라 칭함)간에 다음과 같이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한다. 제1조 (계약체결에 따른 조건)

## 1) 계약 물품

	품 명	모델명	수량	단가(원)	금액(원)	비고
	A항		1	3,730,964	3,730,964	세부견적참조
계	B항		1	3,276,364	3,276,364	
약	C항		1	3,687,000	3,687,000	
물	D항		1	240,000	240,000	
E				이하	여백	
품					_	
	합 계				₩ 10,934,328	NEGO=10,500,000
	부 가 세					
	계약대금총액 (부가기	·치세 포함) :	₩	11,550,000	원정	

# 2) 대금지급 방법

대 금 지 급	구 분	지급약정기일	금 액	지급종류	[특기 약정사항]	
	계약금	2020 . 09 . 28	₩3,465,000	현금(30%)	*기본설치/시운전/서비스포함 * 결제 조건은 현금결제	
	중도금	2020 . 10 . 08	₩6,930,000	현금(60%)		
	잔 금	2020 . 10 . 20	₩1,155,000	현금(10%)		
	합계					

3) 설치장소 : 안산스마트스퀘어 1307~9호

상기와 이면 계약조항과 같이 계약하며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.

주 소:	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53(에이스청계타워808~9호)	사업자번호: 134-87-35399
상 호:	㈜인포솔루션	법인등록번호:
대표자:	신 만 재	TEL:
주 소:	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71-3	사업자번호: 107-16-54133
상 호:	엘지시스템에어컨(J&J ENG)	주민등록번호 :
대표자 :	전용준	TEL: 02)6082-7854-5
주 소:		주민등록번호 :
성 명:	4	TEL:
주 소:		주민등록번호 :
성 명:		TEL:
	상 호: 대표자: 주 소: 상 호: 대표자: 주 소: 성 명: 주 소:	상 호: ㈜인포솔루션 대표자: 신 만 재  주 소: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71-3 상 호: 엘지시스템에어컨(J&J ENG) 대표자: 전 용 준  주 소: 성 명:  주 소:

이면 계약조항과같이 물품매매 계약을 체결함

4) 납품기일(지정장소)

납기는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 납기한다

공사예정일 (2020년 10월 00 일) 입주일 (2020년 10월 00 일)

# 계 약 조 항

본 계약의 편의상 전장에 기재된 구매자( **㈜인포솔루션** )를 "갑" 판매자 ( **엘지시스템에어컨(J&J ENG)** )를 "을"이라 칭하여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#### 제2조 (애프터써비스)

을은 계약제품내에 삽입된 제품보증서에 정한 조건과 내용에 따라 계약제품 성능에 대한 보증을 하며 1년간 애프터 서비스를 행한다. 단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또는 갑의 사용상 부주의 및 고의에 의한 하자 발생시 기타 을이 납품 시공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하여 하자발생시에는 예외로 한다. \* 벽걸이형 or 스텐드형 ( 배수펌프 적용시 애프터 서비스는 1년으로 한다 )

## 제3조 (사정변경)

제1조의 계약금액중 을의 공장출고전에 세법 기타 법령의 개정 및 행정시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가격 및 제품인도조건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그 변경분만큼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#### 제4조 (계약의 해약등)

갑이 다음 조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은 별도와 최고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 제품을 사용금지케 하거나 철거 또는 회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갑의 을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며 기지불된 대금은 그간의 사용료 및 손료와 기타 조세공과금 등으로 충당한다.

- 1) 갑이 을에 대해 제 1조의 상품대금 지급의무를 해태하거나 갑이 발행 또는 배서어음 또는 수표가 결제되지 않을 경우.
- 2) 갑이 체납처분을 받거나 제3자로부터 가압류, 가처분, 압류, 경매 등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갑에 관하여 화의 회사정리 절차의 개시 파산신청 등이 있을경우
- 3) 갑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나 영업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았을때.
- 4) 갑이 본계약 사항중 어느 한가지라도 위반하거나 불이행할때.
- \* 대금 완납할경우 제4조에 관한 조항들은 해당이 안됨

#### 제5조 (소유권 이전시기 및 정지사항)

- 1) 제품의 소유계는 제1조 1항의 계약대금을 전액현금으로 지불 완료와 동시에 갑에게 이전되며 갑은 대금의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기 전에는 동 제품의 이전, 분해, 판매, 양도, 제한 물권의 설정등 일절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.
- 2) 갑은 대금완납 이전(소유권 취득이전)에 동 제품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질행보전(가압류, 가처분등) 강제집행(압류, 경매) 체납처분등의 권리행사를 당하려할 경우에는 이 제품이 갑의 소유가 아니고, 을의 소유임을 알리어 을의 소유권에 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(을은 공인방법 등에 을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다.)

#### 제6조 (변제)

대금은 지급기일내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약속어음 또는 수표에 의해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수표가 현금으로 완제될때까지는 채무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7조 (조세의 감면)

갑이 계약제품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저 할때에는 제품인도일 15일전에 관계 관서장이 발행하는 증명서 (특소세는 면세용도물품증명원) 및 기타 제반서류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제8조 (관할의 합의)

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때에는 갑. 을 간에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되 만일 합의 불성립시에는 을의 본사 소재지 법원의 관할로 하기로 한다. 다만, 을의 분쟁발생지역에 따라 을이 지정하는 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.

#### 제9조 (연대보증)

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상의 갑의 을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.

#### 제10조 (기타)

본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의하여 상호협의하에 결정한다.

본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갑, 을 서명날인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갑, 을 각 1통씩 보관한다.